

獨逸의 「消費者信用法(Verbrauchercreditgesetz)」

梁 彰 洙* 譯

I. 머릿말

譯者は本誌 제29권 3·4호(1988. 12)에 “西獨 消費者信用法制의 概觀”이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이하 “前稿”라고 인용한다). 그 글은 우선 西獨에서의 소비자신용거래의 발달과정과 현황을 개관한 다음, 그에 대한 「法制」로서는 그 중심을 이루고 있던 割賦賣買法(Gesetz betreffend die Abzahlungsgeschäfte)을 주로 다루었다고(前稿 III, IV). 그런데 그 사이에 西獨은 “독일”이 되었고, 또 작년 12월 17일에 消費者信用法이 새로이 제정·공포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위의 할부매매법은 이 법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本稿는 이 독일의 Verbrauchercreditgesetz(略稱: VerbrKrG)를 BGBI. I, 1990, S. 2840ff.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資料를 역자에게 제공하여 준 經濟대의 權五乘 교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이 새로운 법률은 우선 소비자신용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하여 소위 大解決(große Lösung)을 택한 점에 특색이 있다(제 1조 참조). 즉, 소비자신용의 개별적인 거래유형(가령 할부매매)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종전의 소위 小解決(kleine Lösung)을 포기하고, 그 전부를 망라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하나의 法律로써 이를 규율하는 것이다(그 입법에 및 독일 내에서의 논의에 대하여는 前稿, 149면 이하 참조). 그리고 비단 신용공여자와 소비자와의 사이의 관계, 즉 신용계약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신용알선의 경우까지도 규율하고 있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割賦賣買法의 규정들, 특히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서면형식의 요구(새 법 제 4조, 제 6조), 철회권의 인정(동 제 7조) 등을 그대로 다른 소비자신용거래 일반에 확장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細部的으로 살펴 보면, 가령 計座貸越信用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고(제 5조 참조), 또한 소위 通信販賣에 대한 撤回權의 인정을 제한하는(제 8조 참조) 등 참고되는 바가 크다. 나아가 이 새로운 법률은 소위 金融附 賣買契約(finanzierter Kaufvertrag)에 있어서 종전의 판례가 인정하던 소위 對抗事由의 貫徹(Einwendungsdurchgriff)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제 9조 참조). 대항사유의 관철에 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었다(그에 대하여는 우선 前稿, 151면 이하 참조). 새로운 법률은 첫째, 매매계약과 신용계약의 經濟的 一體性이라는 종전 판례가 내건 요건징표를 그대로 법률에서 수용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教授

“경제적 일체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賣渡人이 신용계약의 준비 또는 체결에 협력한 것만을 내걸고 있을 뿐이다(제 9조 제 1항 제 2문 참조). 둘째, 소비자가 그 관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對抗事由에 한정되어서 그 신용의 返濟를 소극적으로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제 9조 제 3항 참조), 이미 지급한 割賦金의 返還을 청구하는 권리를 신용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소위 請求權의 直接行使는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종전의 BGH가 인정하여 오던 청구권의 직접행사(BGH NJW 1980, S. 1155)를 부인하는 취지인가는 資料의 不足으로 알 수 없다. 셋째, 소비자에게 어음(수표)상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제 10조 제 2항 참조). 이는 어음상 채무에 인정되는 소위 抗辯의 切斷에 의하여 대항사유의 관철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독일의 이 새로운 消費者信用法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資料의 不足으로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割賦賣買에 관한 立法作業이 法務部 주관 아래 행하여지다가(譯者는 그에 다른 교수 및 실무자와 함께 참여한 바 있다), 관계 관청 간의 조정의 결과 작년 가을에 그 담당이 商工部로 넘어 갔다. 그 후의 진행상황을 알 수 없으나, 적어도 法務部 주관의 작업에 있어서는 서독의 割賦賣買法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었다. 그러므로 독일의 새로운 법률을 하루라도 빨리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抽譯을 시도하여 본 것이다.

이 법률의 제정과 아울러, 民法, 「訪問販賣 및 그 類似行爲의 撤回에 관한 法律」, 不正競爭防止法(UWG), 民事訴訟法, 「住居斡旋의 規制에 관한 法律」(Gesetz zur Regelung der Wohnungsvermittlung), 營業令(Gewerbeordnung) 등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II. 「消費者信用法」(譯)

제 1 절 적용범위

제 1 조(적용범위)

(1) 이 법률은, 영업상 또는 직업상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용을 제공하거나(신용제공자 Kreditgeber) 알선 vermitteln 또는 소개 nachweisen하는(신용중개자 Kreditvermittler) 사람과 자연인(소비자 Verbraucher) 사이의 信用契約 Kreditvertrag이나 信用斡旋契約 Kreditvermittlungsvertrag에 적용한다. 다만 그 금융이 그 계약의 내용상 소비자의 이미 수행된 영업상 또는 독립한 직업상의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용계약이란,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소비대차 Darlehen, 지급유예 Zahlungsaufschub 또는 기타의 금융보조 Finanzierungshilfe의 형태로 有償의 신용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신용알선계약이란, 신용중개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을 대가를 받고 알선하거나 그에게

신용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소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 2 조(분할금부 또는 回歸的 金부)

제 4조 제 1항 제 1문, 제 3항 및 제 7조 제 1항, 제 2항, 제 4항, 그리고 제 8조는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다음과 같은 계약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準用된다.

1. 집합적인 것으로 als zusammengehörend 매도되는 다수의 물건을 분할하여 공급하는 금부를 내용으로 하고 또한 그 물건의 총체에 대한 代價가 분할하여 지급될 것인 경우.
2.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반복하여 공급하는 금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3. 물건을 회귀적으로 wiederkehrend 취득하거나 購得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제 3 조(적용 제외)

(1)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신용계약 또는 신용계약의 알선 또는 소개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지급될 신용액(純信用額 Nettokreditbetrag) 또는 현금가격이 4백 마르크를 넘지 않는 경우.
2. 그 신용이 영업상 또는 독립한 직업상의 활동의 開始를 위한 것이고 또한 순신용액 또는 현금가격이 10만 마르크를 넘는 경우.
3.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지불유예가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4. 使用者 Arbeitgeber가 그의 勤勞者에게 통상의 marktüblich 이율보다 낮은 이자로 체결하는 경우.

(2) 또한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그 적용이 배제된다.

1. 제 4조 제 1항 제 2문, 제 3문, 제 6조, 제 13조 제 3항 및 제 14조는 금융리스계약 Finanzierungleasingvertrag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 7조, 제 9조, 제 11조 내지 제 13조는 그 신용 제공의 여부가 부동산담보권 Grundpfandrecht에 의한 담보의 설정에 달려 있고 또한 부동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신용에 통상적인 조건으로 제공되는 신용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택금융금고법」 Gesetz über Bausparkasse 제 7조 제 3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그러한 담보설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위와 같은 부동산담보권에 의한 담보설정과 같은 것으로 본다.
3. 제 4조 내지 제 7조 및 제 9조 제 2항은, 그 신용계약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법원의 調書에 기재되거나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 그 조서나 공증문서가 年利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산정된 信用提供의 費用과 그 연이자나 비용이 변경될 수 있는 條件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신용계약

제 4 조(서면형식, 필요적 기재사항)

(1) 신용계약은 서면형식 *schriftliche Form*을 갖추어야 한다.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용계약 일반에 대하여,

- a) 純信用額,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의 최고한도액.
- b) 가능하다면, 이자와 기타의 비용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하여야 할 할부금 *Teilzahlungen*의 총액.
- c) 신용을 返濟 *rückzahlen*하는 방식과 방법, 또는 그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종결에 관한 사항.
- d) 이율과 기타 신용제공의 모든 비용의 개별적 내용. 소비자가 신용알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도 포함된다.
- e) 實質年利率 *effektiver Jahreszins*, 또는 이율이나 기타 가격을 정하는 要因 *preisbestimmende Faktoren*의 변경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음의 실질연이율 *anfänglicher effektiver Jahreszins*. 그러한 처음의 실질연이율과 아울러, 가격을 정하는 요인들이 변경될 수 있는 條件과, 앞으로 반환되어야 할 액으로 말미암아 또는 신용액에 대한 부가금 *Zuschlag*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負擔이 실질연이율의 산정에 산입되는 期間.
- f) 신용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殘金債務保險 *Restschuldversicherung*이나 기타의 보험의 비용.

2. 할부금과 상환으로 특정한 물건이 공급 *liefern*되거나 특정한 다른 급부가 행하여지는 신용계약에 있어서는,

- a) 현금가격.
- b) 할부가격(引渡金 *Anzahlung*과, 이자 및 기타의 비용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여야 할 할부금의 총액).
- c) 개별적 할부금의 액, 數 및 이행기.
- d) 실질연이율.
- e) 신용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보험의 비용.
- f) 소유권유보에 관한 약정 또는 기타 설정될 담보.

이 중 현금가격과 실질연이율은, 신용제공자가 할부금의 지불과 상환으로만 물건을 공급하거나 급부들을 행하는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2) 실질연이율이란, 순신용액 또는 현금가격에 대하여 年 단위의 總負擔을 백분율로써 나타낸 것을 말한다. 실질연이율 또는 처음의 실질연이율은 「價格表示의 規制에 관한 令」 *Verordnung zur Regelung der Preisangaben* 제 4 조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3)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에게 그 서면의 등본 Abschrift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조(計座貸越信用 Überziehungskredit)

(1) 제 4 조의 규정은, 신용기관 Kreditinstitut이 신용계약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그의 현존하는 계좌 laufendes Konto에서 일정액을 대월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 利子를 제외하고는 문제되는 신용에 대하여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이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부가되지 않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용기관은 그러한 신용을 開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비자에게 告知 unterrichten하여야 한다.

1. 신용의 최고한도액.
2. 고지 당시 적용되는 年利率.
3. 이율이 변경될 수 있는 조건.
4. 계약관계의 종결에 관한 사항.

위의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계약조건은 늦어도 최초의 신용제공 후에는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되어야 한다. 나아가 신용이 개설되어 있는 동안에 연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 때마다 소비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제 3 문의 確認과 제 4 문의 告知는 계좌잔금통지서 Kontoauszug상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다.

(2) 신용기관이 현존하는 계좌상의 貸越을 忍容하고 또한 그 계좌의 대월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그 신용기관은 소비자에게 연이율, 비용 및 이와 관련된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告知는 계좌잔금통지서상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제 6 조(형식흡결의 법률효과)

(1) 신용계약이 문서형식을 진적으로 缺한 경우 또는 제 4 조 제 1 항 제 2 문 제 1 호 a) 내지 f) 및 제 2 호 a) 내지 e)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계약은 무효 nichtig이다.

(2) 제 1 항에서 정한 문서형식의 흡결이 있더라도, 제 4 조 제 1 항 제 2 문 제 1 호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소비대차를 받거나 그 신용을 청구하였으면, 그 신용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신용계약의 기초가 된 利率(제 4 조 제 1 항 제 2 문 제 1 호 d))은, 그 이자의 기재, 실질연이율이나 처음의 실질연이율의 기재, 또는 同號 b)에 따른 總額의 기재가 흡결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 축소된다. 기재되지 아니한 비용은 소비자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한다. 이미 합의된 할부금은 감소된 이자나 비용을 고려하여 새로 산정되어야 한다. 가격을 정하는 요인들이 변경될 수 있는 조건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요인이 소비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擔保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설정이 요구될 수 없다. 그러나 순신용액이 10만 마르크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제 1 항에서 정한 문서형식의 흠결이 있더라도, 제 4 조 제 1 항 제 2 문 제 2 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물건이 인도되거나 급부가 행하여졌으면, 그 신용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할부가격이나 실질연이율의 기제가 흠결된 경우에는, 현금가격에 많아도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만이 부가된다. 현금가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市場價格 *Marktpreis* 을 현금가격으로 推定 *im Zweifel gelten* 한다. 담보에 관한 기제가 없으면, 그 설정이 요구될 수 없다.

(4) 실질연이율이나 처음의 실질연이율이 지나치게 낮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 4 조 제 1 항 제 2 문 제 1 호의 경우에는 신용계약의 기초가 된 이율이, 同文 제 2 호의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그 낮게 기재된 비율만큼 축소된다.

제 7 조(철회권 *Widerrufsrecht*)

(1) 신용계약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의 의사표시는, 소비자가 1주일 내에 이를 서면으로 철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2) 제 1 항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발송 *Absendung* 함으로써 준수된다. 그 기간은, 本項 제 1 문 의 내용, 소비자에게 철회권이 있다는 사실, 本條 제 3 항에 의하여 철회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 및 철회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자 *Widerrufsempfänger*의 이름과 주소를 인쇄기술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내고 또한 소비자가 별도로 서명하여야 하는 告示書 *Belehrung*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소비자가 本項 제 2 문에 의한 告示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철회권은 양 당사자가 그 급부를 완료한 때 또는 소비자가 신용계약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후 1년이 된 때에 소멸한다.

(3) 제 4 조 제 1 항 제 2 문 제 1 호의 경우에 소비자가 소비대차를 현실로 받은 *das Darlehen empfangen hat* 때에는, 소비자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후 또는 차용금이 교부된 후 2주일 내에 그 차용금을 返濟하지 아니하면, 철회는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철회에 대하여는 그 외에 「訪問販賣 및 그 類似行爲의 철회에 관한 法律」 *Das Gesetz über den Widerruf von Haustürgeschäften und ähnlichen Geschäften* 제 3 조가 적용된다.

(5)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은, 소비자가 신용계약의 체결 후에 언제든지 해지를 위한 최고기간을 설정할 필요 없이 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이 그 신용을 返濟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 5 조 제 1 항 제 1 문에서 정한 신용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 조(通信販賣 *Versandhandel*에 대한 特別)

(1) 신용계약이 물건의 공급이나 다른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또한 소비자가 개별 분할금의 액을 제외하고 제 4 조 제 1 항 제 2 문 제 2 호 a) 내지 e)에 정한 기재사항을 포함한 通

信販賣商品目錄 Verkaufsprospekt에 기하여 계약체결의 청약을 한 경우에, 소비자가 계약 상대방이 臨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통신판매상품목록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을 때에는, 제 4 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 1 항의 경우에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受領 Erhalt 후 1주일 내에 반환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인정할 때에는, 제 7 조의 철회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返還權 Rückgaberecht은 소비자가 물건을 반송함으로써, 우편소포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還取要求 Rücknahmeverlangen를 함으로써 행사된다. 반송과 환취는 신용제공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행하여진다. 그 기간은 물건의 발송이나 환취요구의 발송으로써 준수된다. 그 기간은 통신판매상품목록 및 注文書 또는 소비자에게 교부된 특별한 文書가 인쇄기술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반환권에 관한 告示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진행된다. 그 외에는 「방문판매 및 그 유사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4 문 및 제 3 조가 적용된다.

제 9 조(結合行爲 verbundene Geschäfte)

(1) 신용이 매매대금의 자금조달 Finanzierung에 기여하고 또한 매매계약과 신용계약이 經濟的인 一體 wirtschaftliche Einheit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신용계약과 결합된 행위를 이룬다. 특히 신용제공자가 신용계약의 준비 또는 체결에 있어서 매도인의 협력을 이용하는 때에는 경제적인 일체가 인정될 수 있다.

(2) 결합매매계약 der verbundene Kaufvertrag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의 의사표시는, 그 소비자가 신용계약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그의 의사표시를 제 7 조 제 1 항에 의하여 철회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제 7 조 제 2 항 제 2 문에 의하여 요구되는 철회권에 관한 告示는, 철회한 경우에는 결합매매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7 조 제 3 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純信用額이 이미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에 갈음하여 철회의 법률효과에 관하여(제 7 조 제 1 항)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결합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對抗事由 Einwendungen에 기하여 소비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비자는 신용의 返濟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공여된 매매대금 der finanzierte Kaufpreis이 4백 마르크를 넘지 않는 경우 및 그 대항사유가 매도인과 소비자가 매매계약의 체결 후에 한 계약변경의 合意로부터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의 대항사유가 공급된 물건의 瑕疵를 원인으로 하고 또한 소비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규정에 기하여 補修 Nachbesserung 또는 代替供給 Ersatzlieferung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 또는 대체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fehlgeschlagen 때 비로소 신용의 반제를 기절할 수 있다.

(4) 제 1 항 내지 제 3 항은 물건의 공급이 아닌 다른 급부에 대한 代價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공여된 신용에도 준용된다.

제10조(대항사유의 포기, 어음 및 수표의 금지 Wechsel- und Scheckverbot)

(1)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항사유를 [독일]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주장하는 권리 또는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 unwirksam 이다.

(2) 신용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제공자의 청구권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어음상 채무를 부담할 의무를 지워서는 아니된다. 신용제공자는 신용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의 담보를 위하여 수표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비자는 언제라도 제 1 문 또는 제 2 문에 반하여 교부된 어음이나 수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그러한 어음 또는 수표의 교부 Begebung로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지연이자, 일부급부의 변제충당)

(1) 소비자가 신용계약에 기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는 지불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지체된 元金 der geschuldete Betrag에 대하여 獨逸聯邦銀行 Deutsche Bundesbank의 그 당시의 割引率 Diskontsatz에 그 100분의 5를 가한 이율로 이자가 부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제공자가 그보다 넘는 손해를 입증하거나, 소비자가 그보다 적은 손해를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체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利子는 특별계정에 기입하여야 하며 원금이나 기타의 신용제공자의 채권과 같은 당좌계정에 편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이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289조 제 2 문을 적용한다. 그러나 신용제공자는 법정이율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행기에 도달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소비자의 이행은, 민법 제367조 제 1 항과는 달리, 우선 권리실현 Rechtsverfolgung의 비용에, 다음으로 남은 원금(제 1 항)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제 2 항)에 충당된다. 신용제공자는 일부 급부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利子請求權에 대하여 민법 제197조, 제218조 제 2 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 문 내지 제 3 문은 그 主請求 Hauptforderung가 이자의 지급인 債務名義에 기하여 그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割賦信用 Teilzahlungskrediten에 있어서 기한이익의 상실)

(1) 할부금으로 변제할 신용에 있어서 신용제공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소비자의 지급지체

를 이유로 신용계약을 解止할 수 있다.

1. 소비자가 적어도 연속하여 2회의 할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체하고 또한 적어도 100분의 5를 지체하였거나, 3년을 넘는 신용계약에 있어서는 신용의 액면액 *Nennbetrag* 또는 할부가격의 100분의 5를 지체하였고, 또한,

2.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2주일의 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잔액 전부를 청구할 것임을 밝히고 지체액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용제공자는 합의에 의한 해결 *einverständliche Regelung*의 가능성에 관한 相談의 기회를 소비자에게 늦어도 위 최고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 신용제공자가 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잔액채무는, 이자 및 계약의 존속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기타의 신용제공의 비용으로서, 기간단위로 계산하면 각각 해지가 발효한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액만큼, 감액된다.

제13조(신용제공자의 解除)

(1) 할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물건의 공급이나 기타의 급부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계약에 있어서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하여서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아래서만 신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해제에 관하여는 약정해제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346조 내지 제354조 및 제356조가 준용된다. 소비자는 계약으로 말미암아 지출한 신용제공자의 비용 *Aufwendungen*도 배상하여야 한다. 반환되어야 할 물건의 收益 *Nutzungen*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간에 발생한 가치감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3) 신용제공자가 신용계약에 기하여 공급한 물건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해제권의 행사로 본다. 그러나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그 물건이 收去 *Wegnahme*의 시점에서 가지는 통상의 매도가격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문은 물건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 신용계약과 경제적인 일체를 이루고(제9조 제1항) 또한 신용제공자가 물건을 회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제의 경우에 신용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법률관계는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다.

제14조(기한 전 지불)

(1) 할부금과 상환으로 물건의 공급이나 기타의 급부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소비자가 기한 전에 이행한 경우에는, 할부가격은, 이자 및 계약의 존속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기타의 비용으로서, 기간단위로 계산하면 각각 기한 전 이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액만큼 감액된다. 신용계약에서 제4조 제1항 제3문에 의하여 현금가격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기초로 하여 산

정된다. 그러나 신용제공자는 원래 정한 존속기간의 처음 9개월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그 기간의 경과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 이자 및 계약의 존속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기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절 신용알선계약

제15조(서면형식)

(1) 신용알선계약은 서면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 계약서면에는 특히 신용알선자의 報酬가 소비대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신용알선자가 신용제공자와의 사이에서도 보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이것도 기재되어야 한다. 계약서면은 소비대차의 공여에 대한 청약과 결합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용알선자는 소비자에게 그 서면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 1 항 제 1 문 내지 제 3 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신용알선계약은 무효이다.

제16조(報酬)

소비자는 신용알선자의 알선 또는 소개로 인하여 소비대차가 소비자에게 현실적으로 행하여지고 또한 제 7 조 제 1 항에 기한 소비자의 철회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소비대차가 다른 신용의 기한 전 償還 vorzeitige Ablösung을 위한 것(貸換 Umschuldung)인 경우에 신용알선자가 이를 알고 있었을 때에는 보수청구권은 실질연이율 또는 처음의 실질연이율이 더 높지 아니하여야만 발생한다. 前信用의 실질연이율 또는 처음의 실질연이율을 산함정에 있어서는 알선비용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7조(기타의 代價)

신용알선자는 소비대차의 알선 또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기회의 소개와 관련된 活動에 관하여 제16조 제 1 문의 報酬 이외에는 代價를 약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신용알선자가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은 약정할 수 있다.

제 4 절 일반적 종결규정

제18조(강행규정성, 면탈금지 Umgehungsverbot)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이 법률의 규정과 다른 약정은 무효 unwirksam이다. 이 법률은 그 규정이 다른 형태로 면탈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